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목적에 생태관광 활성화 추가〉

■ 박정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353호)

2026. 9.

기 후 에 너 지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박 희 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목적에 생태관광 활성화 추가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박정현의원 등 14인
2. 발의연월일 : 2026. 6. 19.
3. 회부연월일 : 2026. 7.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정부는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생태계 보전이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을 활용한 관광, 생태관광 제도 운영을 장려하고 있음.

그러나 댐 주변지역은 뛰어난 자연경관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환경규제로 거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었음.

이로 인해 댐 주변지역 거주 주민은 타 지역으로 이주하여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는 등 지역 소멸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임.

따라서 댐 주변지역의 자연자산을 활용하여 생태관광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변지역 거주 주민의 소득증대 등을 꾀하고자 함(안 제43조제1항).

Ⅲ. 검토의견

1.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목적에 생태관광 활성화 추가

개정안은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가 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목적에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관광 활성화’를 추가하고 있음(안 제43조제1항).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3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 ①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댐건설이 완료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댐주변지역의 주민소득 증대와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댐주변지역의 지원사업(이하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3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 ① ----- ----- ----- ---및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생태관광 활성화 등을-- ----- ----- ----- -----.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현행법에 따라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¹⁾는 댐건설이 완료된 후

1)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댐관리청과 댐수탁관리자) ① 댐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리한다. 다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건설한 댐은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댐을 관리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이하 “댐관리청”이라 한다)는 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댐사용권을 설정받은 자(이하 “댐사용권자”라 한다) 또는 댐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댐²⁾ 주변 지역의 주민소득 증대와 복지 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한 계획(댐주변지역 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댐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에는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분기별 재원조달계획, 사업별 투자계획, 사업별 시행기간·시행자 및 사업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³⁾ 동법 시행령에서는 댐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 시행할 사업을 ① 지역지원사업, ② 주민지원사업, ③ 그 밖의 지원사업 등으로

다른 공공기관에 댐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댐관리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대상 등) ① 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댐을 말한다.

1. 저수면적이 200만제곱미터 이상인 댐
2. 총저수용량이 2천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댐
3. 법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리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리를 위탁한 댐(제1호 및 제2호의 댐은 제외한다)

3)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댐주변지역지원사업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하는 지역의 범위(이하 “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 한다.

1.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 수위선)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다만, 댐저수사용료 보조사업에 관한 계획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이 속하는 특별자치도·시·군 또는 구의 각 관할지역
2. 댐의 발전소로부터 반경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3.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이나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제42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4. 다음 각 목의 지역 중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가. 인공 방수로(放水路)를 통한 댐의 홍수 방류로 어업에 손실이 발생한 지역
 - 나. 수몰이주민의 이주정착지
 - 다. 그 밖에 댐의 건설 및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역으로서 지원이 필요한 지역

② 댐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목적
2. 사업의 개요
3. 분기별 재원조달계획(댐관리청, 댐사용권자 또는 생활용수댐·공업용수댐의 수도사업자의 분기별 출연금액 및 출연 시기를 포함한다)
4. 사업별 투자계획
5. 사업별 시행기간·시행자 및 사업내용
6.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이하 생략)

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음.4)

[표]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세부내용(시행령 [별표 6])

구분		세부 사업내용
1. 지역 지원 사업	가. 소득 증대사업	1) 공동영농시설·농기구수리시설·생산품공동저장시설·농로·농업 용수로 및 농업용양수장 등 농림수산업 관련 사업 2) 톱밥 등 수분 조절재의 공동구입 및 공동퇴비화시설 등 축산업 관련 사업 3) 환경농업 기자재 및 유통시설 등 환경농업 관련 사업 4) 그 밖에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지원사업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나. 생활기반 조성사업	1) 의료기구 및 구급차량 구입 지원 등 의료환경조성사업 2) 노인회관·마을회관·가로등·통학차·버스승차대기장 등 생활 여건 개선사업 3) 무공해자동차 충전시설, 공동 친환경 재생에너지설비,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등 탄소중립형 기반시설 설치사업 4) 그 밖에 생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원사업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설치 지원사업
	다. 댐 주변경관 활용사업	1) 둘레길, 자전거도로, 캠핑장, 공중화장실, 주차장 등 댐 주변경관 을 활용한 휴양 및 레저 관련 시설 설치사업 2) 습지조성, 생태하천의 복원 등 생태복원사업 3) 그 밖에 댐 경관을 활용하기 위하여 지원사업협의회가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2. 주민 지원 사업	가. 주민생활 지원사업	1) 주민건강진단, 의료보험료 지원, 고립주민 교통비 지원, 난방비 지원, 통신비 지원, 전기료 보조, 홍수 조절지 친환경영농지원 등 주민생활지원사업 2) 그 밖에 댐 주변지역 주민의 생활지원을 위하여 지원사업협의회 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나. 육영사업	1) 교육기자재·도서의 구입, 학자금·장학금의 지급, 학교급식시설 지원, 아동급식비 지원, 학교 환경교육 지원 등 육영 관련 사업 2) 그 밖에 댐 주변지역의 육영(育英)을 위하여 지원사업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그 밖의 지원	가. 댐저수 사용료 보조사업	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에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해당 댐의 저수를 사용하고 댐사용권자 또는 댐사용권설정예정자에게 납 부하는 댐저수사용료를 보조하는 사업

4)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대상 등) ②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 시행할 사업은 지역지원사업, 주민지원사업과 그 밖의 지원사업으로 하며, 그 세부적인 내용은 별표 6과 같다.

③ 법 제43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시행기간은 발전(發電) 또는 생활용수·공업용수의 판매수입금이 발생하는 연도(홍수 조절용 댐의 경우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댐건설 완료의 고시를 한 연도로 한다)의 다음 연도부터 댐의 기능이 상실되는 연도까지로 한다.

④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종류별 시행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시행자가 서로 협의하여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바에 따른다.

1. 지역지원사업: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2. 주민지원사업과 그 밖의 지원사업: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

구분		세부 사업내용
사업	나. 홍보 및 부대사업	1) 지역문화행사 지원, 댐환경보전연구 지원, 농기구 수리, 댐 주변 고립지역 도선(渡船) 운영 지원, 자매마을 지원 등 대민 지원, 대 청결운동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업 2) 댐 주변 전망시설, 수상레저활동을 위한 계류시설, 댐 및 지역문화 홍보시설, 전시·공연시설 등의 설치사업 3) 지역 홍보, 댐 견학 등 댐주변지역 홍보사업 4) 녹색생활 실천과 탄소중립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 5) 주민간담회, 지원사업 협의회 운영 등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비고: 각 사업의 내용에 해당 사업 시행과 관련된 조사, 계획, 연구, 시설의 유지·보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한편, 댐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상수원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여러 입지·행위규제가 시행되고 있어 댐의 친수(親水)적·친환경적 이용을 저해하고 있고,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지역활성화 및 주민소득 기반이 부족하며,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경우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에는 사업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⁵⁾⁶⁾

이에 댐의 수질과 생태 환경보전을 전제로 하면서 친수공간 조성 및 관광 자원화 방안을 다각도로 고려할 필요가 있고, 홍수조절, 용수 공급 등 댐 본연의 기능을 유지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이 될 수 있는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시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⁷⁾

5) 김경민·김진수, “댐 주변지역 규제 및 지원 현황과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1103호), 2015.12.30.

6) 김문숙, “분권시대, 소양강댐·충주댐 주변지역 대책을 위한 주민참여 방안”, <댐 주변지역 지원 제도 개선 및 규제완화 토론회 자료집>, 2022.12.27.

7) 위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개정안의 취지는 댐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목적에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관광⁸⁾ 활성화'를 추가함으로써 댐 주변지역의 자연자산을 활용한 전시·해설·체험·교육 등의 사업 추진근거를 마련하고 댐 주변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타당한 측면이 있음.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현행법상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은 댐의 영향을 받는 지역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댐 주변지역은 경관이 수려한 곳이 많으나 지역소멸위기에 직면한 곳이 많아 환경규제의 영향이 적은 생태관광의 확대 및 장려가 필요하므로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47

8)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8. “생태관광”이란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을 말한다.